

## 2021년 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

안 건	협 의 사 항
<p>1. 명예퇴직 절차에 대한 지침수립 및 신청 절차 마련 요청</p> <p>○ 명예퇴직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 정립 및 세부사항을 공지하여 희망자들의 원활한 신청 지원</p> <p>예) 조합원이 처한 여러 상황에 따른 세부내용 공지 (추진계획, 월별 일정표, 신청 가능 대상자, 우선순위)</p>	<p>○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도 인력충원 노력</p> <p>○ 명예퇴직 시기는 내년 6월말로 잠정예정하고 있으며, 퇴직 이후 직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김해시 산하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수요를 반영할 계획임</p> <p>○ 신청대상자 및 우선순위 등 명예퇴직과 관련한 사항은 「인사규정」 제31조에 따르며, 세부일정은 내년 초 사전(인식 및 수요)조사 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 및 접수, 인사위원회 의결을 추진할 계획임</p> <p>○ <u>공사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 큼 6월말 대상자에 대해 확정 시행한 후 향후 확대 방안</u>에 대해 김해시와 추가적 협의</p>

안 건	협 의 사 항
<p>2. 자격선임 관련 법정 의무교육 재택근무 인정 요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격선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직 법정 교육 시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으나, 대면온라인이 아닌 경우는 재택교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</li> <li>○ 코로나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으로 대체된 기술관련 법정 교육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정 요청 (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교육을 받을 경우, 교육에 집중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전에는 기술직 법정 의무교육은 대부분 집합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으나,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분의 법정 의무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</li> <li>○ 자격선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직 법정 의무교육 중 사이버로 진행되는 교육에 한해서는 교육 중요성 및 집중도를 위해 재택근무 교육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</li> <li>○ 재택교육으로 진행시 재택근무 교육 일수는 주관 교육기관이 코로나 이전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일수를 기준으로 함</li> <li>○ 사업장 특성 및 업무 공백을 고려해 부서장 판단하에 진행</li> <li>○ <u>재택근무 교육으로 22년도 년초 계획을 수립 할 때 명확히 명시 할 것이며 기한이 정함이 없는 법정교육일 경우 인정교육 시간 및 업무 공백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판단하에 적정하게 시행토록 권고함</u></li> </ul>

안 건	협 의 사 항
<p><b>3. 지출서류 간소화 및 법인카드 사용액 증액 요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질의1)</b>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등 기존과 변동이 없는 서류를 매년 제출하는데 있어 종이서류 과다 및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</li> <li>○ <b>질의2)</b>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번호와 입금계좌를 명시하여 발급하는 경우 생략방안</li> <li>○ <b>질의3)</b> 본부에서 일괄 계약한 용역의 경우, 4대보험 완납 여부를 계약부서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해당 문서를 생략하는 방안</li> <li>○ <b>질의4)</b> 사업장 별 법인카드 사용 시, 팀별 예산규모를 감안한 사용금액 증액 요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답변1)</b> 지출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및 「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」, 「용역계약일반조건」에 의거 필요한 구비서류 임으로 11개 항목에 대하여 첨부하여야 함. 전부서 공통업체(2개 팀 이상)로 연간 단가계약 된 복합기 및 무인경비 임차료,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에 대한 지출 시에는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은 생략하여도 무방함.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, 통장명의 등 변동사항은 명확하게 확인하여 지출 요함</li> <li>○ <b>답변2)</b>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은 필히 지출시 첨부. 다만, 전부서 공통업체(2개 팀 이상)로 연간 단가계약 된 복합기 및 무인경비 임차료,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에 대한 지출 시에는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은 생략하여도 무방함</li> </ul> <p>&lt;계속&gt;</p>

안 건	협 의 사 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data-bbox="756 376 1425 772">○ <u>답변3)</u> 「국민연금법」 제95조의 2 (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)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1조의3(보험료의 납부증명)에 의거 지출시 필수적 사항임. 다만, 정수기 및 무인경비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부서에서 일괄 게시판에 게시 하도록 하겠음</li> <li data-bbox="756 853 1425 1189">○ <u>답변4)</u> 법인카드 발급기관은 공사이고 지출은 김해시 명의로 지출함에 따라 불가하며,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00만원 한도 내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</li> <li data-bbox="756 1270 1425 1494">○ <u>답변내용 외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와 동일한 회계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변경 될 경우 향후 감사 지적의 우려가 되며,</u></li> <li data-bbox="756 1574 1425 1966">○ <u>4대 각서(계약보증금 지급각서, 청렴 서약서 등)의 경우 행안부 및 국민 신문고를 통해 글자 크기 줄이거나 법적 근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간소화를 통해 1장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</u></li> </ul>

안 건	협 의 사 항
<p><b>4. 통합 채용 시 퇴직자 결원대비 사전 채용 요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김해시 산하 기관의 경우, 김해시에서 통합채용으로 결원에 대한 즉각적인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</li> <li>○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직이 예상되는 바(6월말, 12월말) 퇴직 시 생길 수 있는 결원에 대해 사전 인력 채용 요청 (채용은 먼저 하고, 발령은 퇴직 시점)</li> <li>○ 휴직자, 퇴사자 발생 시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현재 복지재단, 문화재단 기 시행중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합 채용은 연중 1회 김해시 산하 기관 전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직 및 불시적인 퇴직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채용에 대해서는 공사만 별도로 추가적인 채용은 불가함</li> <li>○ 다만, 예측이 가능한 정년퇴직의 경우 통합채용 수요에 반영하며 퇴직자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반기 정년퇴직 등 수요예측이 가능한 결원에 대해서는 통합채용 시 그 결원을 반영하고 있으며,</li> <li>- 퇴직하는 직렬로 무조건 채용하는 것 아닌 당시 사장님 및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원 조정을 통해 직렬은 변경 될 경우도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휴직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</li> <li>○ 하반기 정년퇴직 결원에 대해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</li> </ul>